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등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4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6호)
-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6호)
- 이현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7호)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5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 요	1
II . 검토의견	8
1. 아동학대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제외 등 (안 제194호 정성국의원안)	8
2.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안 제486호 강선우의원안 · 안 제555호 임광현의원안)	20
3.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예방업무 등 필요조치 의무화 (안 제516호 배현진의원안)	34
4. 자립지원 대상 확대 등 (안 제517호 이현승의원안)	39

I. 개요

1.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성국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7.
- (3) 회 부 일 : 2024. 6.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는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 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단서 신설).

또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자 함(안 제17조제5호).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 및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2.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6. 14.
- (3) 회 부 일 : 2024.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수당’이 있겠으나, 대상 연령이 8세 이하이며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매달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부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함.

이로 인해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3. 배현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배현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4.
- (3) 회 부 일 : 2024.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다 보니, 2008년 도입 이후 여전히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지정된 지역보다 더 많아 아동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공원이나 학교 등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4.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5.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4. 6. 17.

(3) 회 부 일 : 2024. 6. 18.

나.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가.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나.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 다. 아동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 라.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 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II. 검토의견

1. 아동학대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제외 등 (정성국의원안 제3조제7호 단서 신설, 제17조제5호 및 제28조의2 등)

□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폭언·욕설·비방 등’을 정서적 학대행위의 유형으로 예시하여 그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아동학대관련범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 내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7호 단서 신설, 제17조제5호, 제2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3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 ----- ----- --.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

7의2. ~ 11. (생략)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u>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u>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 11. (생략)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⑤ (생략) <u><신설></u> <u><신설></u>	<u>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u> 7의2.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u> ----- ----- ----- ----- ----- 6. ~ 11.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u> <u>⑧ 제7항에 따른 정보 삭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첫째,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개념에서 제외하여 일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교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원의 정당한 유아(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유기 및 방임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개정 및 시행(2023. 9. 27.)된바 있음.

< 개정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내용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u>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u>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u>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도 「유아교육법」 등과 유사하게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2024. 2. 6.)되어 시행 예정임(2024. 8. 7.).

< 개정 「영유아보육법」 내용 >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특히, 아동학대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정(2023. 12. 26.)된 바 있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교원 보호를 위한 이러한 법률의 개정 흐름과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와 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을 학대할 수 없도록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¹⁾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아동권리보장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보호·지원 등 아동복지에 대한 일련의 사항을 기술한 법률로,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모든 학생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받는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아동권리보장원	교권보호 4법 등 개정·시행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보호자에서 일부 직종만 그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대구광역시 교육청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함

□ 둘째,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로 규정하는 관련된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제17조)은 금지행위로 정서적 학대행위 외에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방임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제17조) 규정 >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 매매 행위 2. 음란한 행위(매개 행위)·성적 학대행위 3.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6. 유기·방임행위 7. 장애아동 공중관람 행위 8. 아동을 이용한 구걸 행위 9. 유해한 곡예 행위 10. 아동양육 알선 금품 취득·요구 행위 11. 아동에게 증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삭제 <2014. 1. 28.>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먼저,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행위 도입 및 변경 경과를 살펴 보면, 제정 이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하면서 아동학대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하도록 개정²⁾되었음.

<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행위 도입 및 변경 경과 >

구 분	정 의
1962년 「아동복지법」 제정 및 1981년 「아동복지법」 으로 전부 개정	제18조(금지행위)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 람시키는 행위 <u>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u>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 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공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000년 전부 개정	제29조(금지행위) <u>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u>
2021년 일부 개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 함한다)

□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보면,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의 발생 건수는 2018년부터 5,862건에서 2021년 12,3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0,63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기간 23.8%에서 38%로 증가하여 왔음.

2) 아동이 가정폭력에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함(대안 제안이유)

<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

(단위: 건, %)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8년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0)
2019년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0)
2020년	3,807	(12.3)	8,732	(28.3)	695	(2.2)	2,737	(8.9)	14,934	(48.3)	30,905	(100.0)
2021년	5,780	(15.4)	12,351	(32.8)	655	(1.7)	2,793	(7.4)	16,026	(42.6)	37,605	(100.0)
2022년	4,911	(17.6)	10,632	(38.0)	609	(2.2)	2,044	(7.3)	9,775	(34.9)	27,971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거나, 유형력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는³⁾ 등 그 특성이 무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행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변에서 학대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바, 개정안은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예시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여 무고성 학대 행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의 주요 행위 양태 또는 유형을 법률에 규정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정당행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현장 관계자의 이해도 제고하여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⁴⁾

3) 대법원 2011. 10. 13. 2011도6015 판결 참조

4) 아동학대 현장 관계자가 정서학대 상황을 목격해도 훈육이었다는 보호자들의 항변이 현장전문가의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어 해당 아동이 학대적인 양육 상황에 방치되고,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현장전문가에게도 정서적 학대의 행위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란 의견이 있음. 장혜영, “정서적 학대의 의의 및 판단 기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2024. 5.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헌법재판소 >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판시함.

그 예시로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제시하였음⁵⁾.

< 대법원 >

정서적 학대행위를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다’고 판시하였음⁶⁾.

- 다만,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를 명시함으로써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학대 행위의 판단에 소극적일 수 있는 등⁷⁾ 아동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우려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국제법으로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5)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헌재 2016. 3. 31. 2015헌바264; 2020. 4. 23. 2019헌바 537 결정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6) 대법원 2011. 10. 13. 2011도6015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 5769판결

7) 장혜영, 같은 자료.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이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화·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정서적 학대 개념의 모호성 해소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폭언과 위협’을 예시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함
아동권리보장원	정서적 학대에는 언어적 학대 행위 이외에도 비언어적 학대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므로 정서학대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예시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학대 유형은 법령상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정서적 학대의 예시만 명문화할 것인지 신중 검토 필요
대구광역시 교육청	○ 개정안에 따라 폭언, 욕설, 비방 등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해석될 수 있음. ○ 폭언이나 비방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어떠한 수준의 발언을 폭언이나 비방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분쟁이 될 수 있음 ○ 생활지도나 훈육을 위한 발언이 폭언 또는 비방으로 포섭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음 ○ ‘폭언, 욕설, 비방 등’의 지속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 1회성의 부정적 발언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게 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인 동급생 사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주장하며 무리한 고소를 할 가능성도 발생함

□ 셋째, 아동학대관련범죄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등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절차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장은 현장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내린 후⁸⁾,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⁹⁾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는데¹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가 아닌 경우 “일반사례”로 입력·관리하고 있음.

8)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9)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0)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교육·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아동정보시스템 주요 입력 정보 >

구 분	입력·관리 정보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상자관리	아동학대 피해로 신고된 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등)
아동학대 사건 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 판단, 조치관리, 피해아동보호계획, 사례종결 등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
아동학대 사례 관리	피해아동보호계획,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 제공, 심리 치료, 사례점검, 종결 후 개입 등 아동학대 사례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

*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현재 아동학대 사례 판단 자체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는 있으나¹¹⁾, 아동학대 및 일반 사례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하는 경우에는 사전고지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정보는 영구보존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 확정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내 피신고자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학대 신고 등이 있는 경우, 현장의 긴급 보호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련 정보가 필요한 점 등 아동 보호 측면에서 동 기록 유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11)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는 당사자(해당 건의 피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사례관리연계안내서를 통지하고 있는데, 사례관리연계안내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실, 향후 사례관리(상담·교육·치료) 연계 계획 안내,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재판단 요청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후 수사·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요청 또는 지자체 직권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재판단 받을 수 있음. 지자체의 재판단 결과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신고자의 정보 등은 “아동학대 사례”에서 “일반사례”로 변경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수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판단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목적·취지가 다른 독립된 절차이고, 재학대, 반복적 신고 등의 경우 아동의 긴급한 보호 및 아동학대 판단 등에 동 정보가 필요하므로 수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무혐의·무죄 판단을 이유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곤란하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범죄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명칭을 ‘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음.
경상남도	아동학대범죄 수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판단되는 아동학대와는 그 범위가 다르며, 처벌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음. 따라서, 시스템에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 증진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지키는데 유익함. 또한,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기록된다고 하여 교사에게 처벌이나 불이익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 삭제 필요성이 낮음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므로 아동학대 범죄 수사의 무혐의·무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판단이 가능하여 무혐의·무죄 판결 사례의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삭제할 경우 사례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아동학대 신고·판단 현황 관리 또한 불가함. 또한, 과거 신고 이력도 아동학대 판단 근거의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삭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

2. 아동의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강선우·임광현 의원안)

- 2건의 개정안은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강선우의원안에서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적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호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학자금 등 자립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임광현 의원안에서는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적립하고, 보호자는 동 금액 하에서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금 용도 및 취약계층 아동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행	강선우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자립에 필요한 자산	2. -----	

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 5.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원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절의2 자산형성지원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정부는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적립하는 사업(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절의2 우리아이자립펀드제도 제44조의2(우리아이자립펀드) ① 국가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하 “정부적립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의의 계좌(이하 “우리아이자립펀드”라 한다)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 보호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이하 “보호자적립금”이라 한다)을 입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아동에 대한 보호자적립금의 월 총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4. 그 밖에 가족을 돌보는 아동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동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와 보호자의 적립금만이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좌

④ 아동은 적립금(정부
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
을 말하며, 운용수익
및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에 적립된 금액은 의료비 등 중도 인출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외에는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에 인출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⑥ 적립 금액, 지원의 방법·절차, 중도 인출 사유, 적립금 사용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⑤ 제44조의3에 따른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적립금만이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적립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지급된 정부적립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지급 중단의

<신 설>

사유가 있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경우

⑦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정부적립금의 지
급을 위한 조사·질문,
정부적립금의 지급 결
정, 정부적립금의 지급
시기, 우리아이자립펀
드의 사후관리, 권리보
호, 시효 등에 대해서
는 「아동수당법」 제6
조부터 제10조까지(제1
0조의 경우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2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아동수당”
은 “정부적립금”으로,
“8세”는 “18세”로 본다.
⑧ 중도 인출 방식·절
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우리아이자립
펀드사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
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
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

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우리아이자립
펀드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
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
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이 취소된 우리아이자
립펀드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
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우리아이자립펀드제
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
려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⑦ 그 밖에 우리아이자 립펀드사업자의 책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4조의4(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우리아이자 립펀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에 관한 우리아 이자립펀드사업자 평 가 2. 건전하고 효율적인 우리아이자립펀드제 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3.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 한 아동 대상 교육 실시 4. 그 밖에 아동의 건 전한 자산 형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는 우리아이자립펀 드사업자의 운용성과, 운용역량, 수수료의 적
--	---------------------------	---

		<u>정성 등을 대상으로 하</u> <u>고, 그 밖에 평가 기준</u> <u>· 절차 및 방법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	--	---

- 국가와 지자체는 현행 「아동복지법」(제42조¹²⁾)을 근거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 ①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전문치료기관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③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음¹³⁾.

12)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대상 아동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
기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아동이 일정금액을 적립(월 최대 적립금액 50만원)하면 국가 및 지자체¹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대상 아동, 정부 적립금, 매칭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내역 >

연도	구분	기존	변경사항
2011	대상 확대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포함하여 확대
2016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확대
2017	지원금 확대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만원으로 확대
2018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3세로 한정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신규가입 연령 만 12세~17세로 확대
2020	지원금 확대	월 최대 4만원	월 최대 5만원으로 확대
2022	정부 매칭비율 확대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1	아동적립금 1 : 정부지원금 2
2024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가구 연령 (만 12세~17세) 소득기준(생계·의료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만 18세 미만) 소득기준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빈곤 상태를 예방하고 사회불평

14) 지자체에 대한 국가 보조율: 서울(40%), 지방(70%)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나, 2건의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에 더하여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국가가 아동의 자산 축적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대응책으로서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은 현행 아동과 정부의 적립금 매칭 방식이 아닌 정부 직접 적립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자가 저축 여력이 없거나 적립을 적게 할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일정 부분의 자산 형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 비교 >

구분	강선우의원안	임광현의원안
사업명	자산형성지원사업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방식	아동 계좌에 적립	아동 계좌에 적립
정부적립금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월 10만원
보호자적립금	일정 금액 (한도 없음)	정부적립금 적립된 달에 한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
인출 가능 시점	18세 이후	18세 이후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불가 (의료비 등 중도인출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아동의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출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직업교육·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 아동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취약계층 아동 추가 지원	보호조치 중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가족을 돌보는 아동 등 보건	-

구분	강선우의원안	임광현의원안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	
정부적립금 지급 중지 및 환수	-	아동의 사망,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및 결정 철회 등
사업자	금융기관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
사업자의 계좌 관리 대상	정부와 보호자의 적립금	적립금(정부+보호자+운용수익 및 이자)
사업자에 관한 사항	별도 규정은 없으나, 현행 「아동 복지법」(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의 은행 등에 위탁 가능	사업자 자격, 등록 및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의 경우 가입자 보호 조치 및 업무 이전에 관한 사항 규정
정부의 책무	-	사업자 평가,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지원, 아동 대상 교육 등 책무 규정

□ 한편으로, 강선우의원안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동 사업 내에서 현행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적립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대체하는 방식인 반면, 임광현의원안은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존치시키면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2건의 개정안 모두 선별적 지원 방식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강선우의원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그 외, 강선우의원안에서는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양육 부담 완화 및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의 제도 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정부적립금과 관련하여 강선우의원안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임에 반하여 임광현의원안은 월 1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바, 어떤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2건의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7조 1,000억원씩 향후 5년간 35조 5,000억원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자산형성지원사업(강선우의원안) 우리아이자립펀드(임광현의원안)	7.6	7.4	7.1	6.8	6.6	35.5	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바, 재정투입 대비 출산율과 사회복리에 대한 효과성 검토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범죄예방업무 등 필요조치 의무화 (배현진의원안 제32조제1항)

□ 개정안에서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등) ① ----- ----- -----위하여----- ----- ----- ----- -----하여 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2조15)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15)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주변구역(출입문 또는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도시공원의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시설 통학·이용 아동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조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구역에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음.

< 아동보호구역 개요 >

-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2조
- **(도입목적)**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으로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확산에 대응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08~)
- **(아동보호구역 범위)**
 - 도시공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어린이집, 초등학교(특수학교), 유치원: 해당 시설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 **(지정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절차)**

신청	조사	지정
도시공원 관리자 또는 시설의 장이 지정 신청	<조사 내용> · 연간 아동범죄발생현황 · 시설통학·이용 아동수 · 범죄발생 우려여부 등 <조사 절차>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필요한 자료 요청	<지정 기준>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절차> ·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필요한 자료 요청

- **(아동보호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 범죄예방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재량)

□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인천 등 39개 시·군·구에 총 1,746개의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특별자치시·도 포함)에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

(단위: 개소, 대)

시도	시군구	시설별 (개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
		계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 (3호)	유치원 (4호)	
서울	4개	241	105	6	125	5	5,061
부산	16개	203	15	50	121	17	2,372
인천	1개	16	0	6	6	4	16
대전	1개	150	66	35	23	26	982
경기	3개	782	7	728	47	0	7,828
강원	3개	47	29	4	14	0	118
전북	4개	101	39	18	28	16	308
전남	2개	50	0	11	37	2	105
경북	1개	24	24	0	0	0	138
경남	4개	132	46	20	65	1	586
합계	39개	1,746	331	878	466	71	17,514

*자료: 보건복지부 시도 취합자료(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 없음)

□ 한편, 전국에 도시공원은 18,858개소, 어린이집은 28,954개소, 초등학교는 6,175개소, 유치원은 8,44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 중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비율도 각각 9.3%, 1.1%, 14.2%, 0.8%에 불과함¹⁶⁾.

□ 반면, 2022년 발생한 284건의 약취유인범죄 중 62.7%에 해당하는 17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는데, 아동

16) 도시공원수: 공공데이터포털, 어린이집·초등학교·유치원 수: KOSIS 통계

유괴범죄가 가장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12:00~17:59)로 전체범죄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노상(45.5%), 주거지(24.7%) 였음¹⁷⁾. 또한, 아동에 대한 실종 및 가출신고는 2021년 21,379건, 2022년 26,416건, 2023년 25,628건임¹⁸⁾.

□ 개정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전국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등 주변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순찰 및 아동지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가 되는 경우 경찰 순찰인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재정 소요가 발생¹⁹⁾하고, 순찰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이 예상되는바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면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도시공원 등 주변을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위험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경찰청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할 경우 현장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긴급신고 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개별 지역의 위험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는 재량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7) 대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

18)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1

19) 2024. 7. 12. 기준 현재 동 개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추계되지 않았으나, 제21대 국회 유사법안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7,895억원이었음.

< 관련 부처(청) 및 지자체 의견 >

관련 부처(청) 및 지자체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을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위험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필요 조치 의무화를 위해서는 경찰 순찰 인력의 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한 재정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경찰청	○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현장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 도시공원 △ 어린이집·유치원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 특히, 필요한 조치 중 순찰의 주체인 지역경찰은 순찰 외에도 112신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긴급신고 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모든 도시공원 등 주변구역을 의무적으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위험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는 재량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경기도 화성시	○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예산과 인력의 중복을 막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자립지원 대상 확대 등(이헌승의원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조치의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고, 자립지원실태조사 대상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대상에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호시설의 아동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u>아동복지시설</u>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 ----- ----- <u>아동복지시설</u> <u>이나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u>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u>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 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 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 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 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야 한다. ②·③ (생략)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 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 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 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5. -----제4호까지에서----- ----- ----- ----- -----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 ----- -----아동복지시 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아동 을 보호하는 시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 치·운영) ① ----- -----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 인 거주시설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 -----.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 「아동복지법」(제38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보호 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및 자산형성지원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③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조기보호종료아동을 규정하고 있음²⁰⁾.

□ 자립지원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²¹⁾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²²⁾ 외에 아동·청소년 보호

20)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거주시설) ①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2)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 13. (생략)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2021년 기준으로 약 2,000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게도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아동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입소자	30,693	29,676	29,659	29,086	28,565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3,213	2,898	2,628	2,245	1,928
장애아동 비율	10.5	9.8	8.9	7.7	6.7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10권)

- 실제로, 자립지원 조치 중 자립수당의 경우,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되거나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사람으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²³⁾,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자립수당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23) 조기보호종료의 경우, 15세 이전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경우에만 자립지원 대상자가 됨.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조치를 통해 그 보호를 두텁게 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보호자의 양육 가능 여부에 따라 입소하여 일정 연령이 되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동과 달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은 장애 여부로 입소하여 의사에 따라 퇴소가 가능한바,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조치를 규율하거나 실태조사²⁴⁾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또는 장애청년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고,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자립지원이 장애수당,

24)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서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과 소비, 주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복지시설의 이용, 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요구 등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의 지급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일상생활과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와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복지요구에 관한 사항
9. 가구유형·가구소득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기존 장애인 지원과도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장애인 복지지원체계 내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법 제정 목적 및 지원체계를 고려할 때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함.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수당, 자립훈련비,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근거 등 규정되어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청년의 입장에서, ①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자립지원이 필요하고, ② 장애수당,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기존 장애인 지원과도 연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장애인복지 지원체계 내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장애아동 포함)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퇴소아동 조사도 장애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아동·청년에게는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498